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명확화>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1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 명확화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Ⅲ. 검토의견

1.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 명확화

개정안은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압류금지 재산) ----------. 1. ~ 13. (현행과 같음) 14.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2025. 1. 31)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개월의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246조에서는 이러한 생계비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이 마련되었음.[1]이는 채무자

1)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지방세체납 처분 절차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현행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은 보장성보험의 ①보험금, ②해약환급금, ③만기환급금 및 **④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2] 등인데, 「민사집행법」시행령[3]상 압류가 금지되는

---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생계비계좌의 예금액은 185만원 이하이므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생계비계좌의 185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계좌를 통일적·일관적으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